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 9. 1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4. 8. 12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4. 8. 13
- 라. 상정일자 : 2014. 9. 01(제218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 검토보고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이 지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아동분야 사업지침」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수의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함.
- 전문 법인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아동학대예방 사업 추진 및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사업) 민간위탁 운영
- 대상기관 : 2개소

연번	기관명	주소	운영주체	최초 지정일	관할구역
1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2000.10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경인로 883(부평동)	굿네이버스	2004. 5월	부평구, 계양구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
 -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 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3년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¹⁾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이 지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²⁾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아동복지법³⁾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10개 군·구에 대해 1개 기관을 지정(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4년 5월

1) 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부터 1개 기관을 추가(굿네이버스)로 지정하여 부평구, 계양구를 관할하게 함으로써 권역별로 현재 총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운영 현황>

연번	기관명	주소	운영주체	최초 지정일	관할구역
1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2000.10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경인로 883(부평동)	굿네이버스	2004. 5월	부평구, 계양구

<2014년 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총계	분권교부세	시비	지원내용
1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552,291	150,000	402,291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75,789	150,000	125,789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 제공, 피해아동 가정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 인식전환 교육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12시간 이내, 그렇지 않은 때는 72 시간 이내에 현장에 나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의해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긴급히 격리할 필요가 있으면 3일간 의료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뒤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에게 장기 보호를 요청하게 됨.

○ 시에서 지정한 아동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2개기관 총 12명으로 상담 건수(학대신고 포함)는 2013년 734건에서 금년 6월말 현재 506건으로 지난해 대비 70%로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또한 아동 학대의 약85%는 부모(양부모, 계부모 포함)에 의해 일어나며 학대 사례별로는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방임 15.6%, 정서 7.2%, 신체학대 3.6% 순으로 나타났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현황>

시 설 명	현원	관장	상담원 (팀장포함)	심리치료사	기타 (센터운영 인력 등)	비 고
총 계	19	2	12	1	4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13	1	7	1	4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6	1	5	-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실적 현황>

○ 2011 ~ 2013년도 사업실적

- 상담실적

구 분	계(A)	학 대 사 례 상 담								일반상담			비고
		계	정서	신체	성	방임	유기	중복	조사 진행 등	계	전문 기관 의뢰	전화 상담	
2011	444	339	31	14	11	60	1	124	98	105	-	105	
2012	559	449	42	12	6	92	1	170	126	110	-	110	
2013	734	536	53	37	2	120	1	126	197	198	-	198	

○ 2014년도 사업실적(6월말 현재)

- 상담실적

구분	계(A)	학 대 사 례 상 담								일반상담			비고
		계	정서	신체	성	방임	유기	중복	조사 진행중 등	계	전문 기관 의뢰	전화 상담	
건수	506	366	32	20	1	44	-	143	126	140	-	140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방식 개선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검증된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 보이며,

○ 또한 아동복지법(부칙 제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및 2014 아동복지 사업안내 지침(최초 1회에 한해 기존 지정 기관과 수의계약 가능)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사업 수행에 있어 전문성, 기술성,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민간위탁에 한해 그동안 시에서 지정하여 운영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임.

< 동의안 주요내용 >

- 명 칭 : 『**인천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3년간
- 위탁계약방식 : 수의계약
 - (현재 운영중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굿 네이버스
- 추진 절차 및 일정(예정)
 - 의회 동의 : 2014. 9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 10월 내
- 위탁 기간 3년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예정
 - * 최초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하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함으로써 기존 운영 법인 및 기관의 책임감과 업무실적 제고

4. 질의 및 답변요지

○ 수의계약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 사업지침에 최초 민간위탁 운영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개 기관으로 인천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 2개 기관외에도 시에서 직영하는 미추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나더 있어서 관리가 가능함.

○ 세이브 칠드런스 코리아와 굿네이버스 사업지원액이 차이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 세이브 칠드런스 코리아가 관리하는 지역이 많아서 차이가 있음.

○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에서 인천사회복지종합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그동안 운영해 오다가 인천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기간이 만료되자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시로 문서를 통보했다는데 자부담이 많은 사업은 접고 앞으로 확대추세인 아동보호전문기관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에서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외국사업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국내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만료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음.

5. 토론요지

○ 찬성 : 7명

(이한구 · 박영애 · 장현근 · 공병건 · 임정빈 · 조계자 · 황홍구 의원)

○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7. 기타사항

○ 없음.

붙임 :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



 仁川廣域市
<http://www.incheon.go.kr>

아동청소년과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수의계약)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에 지속성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협약체결 등)
-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발행)

II 추진배경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이 지정 → 위탁으로 변경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바,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따라 위탁운영 추진
-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상 민간위탁 계약 체결 후 보건복지부로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정부의 방침 및 정책을 준수하고자 함.

Ⅲ 추진방침

- 위탁계약 방식 : 수의 계약
- 위탁기간
 - 3년(계약체결일 ~ 3년간)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3년 이내] 에 따라 계약기간 3년 결정
- 민간위탁(수의계약) 사유 및 타당성
 - 아동학대 업무의 특성상 사업 수행에 있어 전문성, 기술, 차별성 존재 하므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
 - ‘14. 9. 29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되는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아동학대 정책의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학대 예방 업무의 안정적 안착이 필요하고,
 - 특례법 시행 前인 현재도 이미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폭주 (전년도 대비 30% 증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과중되는 바, 특례법 시행 後의 업무과중, 시행착오를 대비하기 위해 노련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법인에의 위탁이 타당
 -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지침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p. 435~436에 따라 지정 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함으로써 종전 지정 기관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IV 기관·수탁자 현황

1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목 적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예방

○ 현 황

연번	기관명	주소	운영주체	최초 지정일	관할구역
1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경원대로 899 (주안동)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2000.10월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경인로 883 (부평동)	굿네이버스	2004. 5월	부평구, 계양구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
-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 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자원 개발 등

○ 위탁대상 기관 예산 규모(2014년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기타	비고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741,155	65,780	324,962	337,469	12,944	※ 시 보조금 규모 : 552,291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384,807	61,200	78,451	241,636	3,520	※ 시 보조금 규모 : 275,789

2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현황

○ 2013년도 사업실적

- 상담실적 : 734건(학대 536건)

구 분	계(A)	학 대 사 례 상 담								일반상담			비고
		계	정서	신체	성	방임	유기	중복	조사 진행 등	계	전문 기관 의뢰	전화 상담	
건수	734	536	53	37	2	120	1	126	197	198	-	198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 153,599명
- 아동권리교육센터 교육 및 홍보 : 43,123명
- 입양 및 요보호아동 심리치료 : 754명

○ 2014년도 사업실적(6월말 현재)

- 상담실적 : 506건(학대 366건)

구 분	계(A)	학 대 사 례 상 담								일반상담			비고
		계	정서	신체	성	방임	유기	중복	조사 진행 등	계	전문 기관 의뢰	전화 상담	
건수	506	366	32	20	1	44	-	143	126	140	-	140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 37,563명
- 아동권리교육센터 교육 및 홍보 : 34,448명
- 입양 및 요보호아동 심리치료 : 335명

3 수탁자 현황

법인명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굿네이버스
대표자	김보노	정해원
설립일자	1983. 7. 6	1996. 3. 13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53길 5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사업 · 빈곤아동 지원사업 · 보건의료사업 · 다문화가정아동 지원사업 · 청소년지원사업 · 보육사업 · 해외개발 및 긴급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사업 · 지역복지사업 · 심리정서지원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 운영 -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2개소 운영 -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함
기타 세부 현황	붙임의 수탁자 세부현황 참고	

V 세부추진계획

1 위탁 개요

- 대상 및 위탁 법인
 -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세이브더칠드런
 -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위탁 기간 : 3년(계약체결일부터 ~ 3년간)
- 위탁 방식 : 수의계약
- 위탁사업 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그 외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등

② 추진 절차 및 일정



VI 행정사항

- 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 매 분기
-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연중

VII 기대효과

- 지정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던 기존 법인 및 기관의 아동학대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감 제고 및 업무실적 향상 기대
-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체계적인 지원이 검증된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아동복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72호, 2012.12.18., 타법개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관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5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7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 기관 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2. 아동학대 관련 국제 교류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담 치료보호시설 운영
4. 아동학대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②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담 치료보호시설 운영

[별표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치료실

-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접수, 긴급 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

1. 관리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가.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일지
-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마. 예산서 및 결산서
- 바.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 사.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자. 신고 또는 접수받은 아동학대의 조사·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

3. 그 밖의 사항

-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가정 보존과 가족 기능의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근거 조항

○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으로 본다.

○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p.425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05. 11)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승인·취소권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08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방식이 지정에서 위탁으로 변경
- '08년 이전의 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필요(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방식은 지정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모 또는 현재 기관과의 수의계약 모두 가능하나 향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공모를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 * 위탁계약 없이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급적 '14년 3월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제출할 것)

○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p.436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 (현황) '08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방식이 위탁방식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경과 규정이 마련
- (위탁계약 방식)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지정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 또는 현재 지정된 기관과의 수의계약 모두 가능하고 향후 위탁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공모를 통해 위탁계약 체결